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·대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고성미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 및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및 대행 사무의 범위, 비용부담의 방법과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(안 제4조)
-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, 운영 및 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(안 제5조 ~ 안 제7조)
- 위탁 및 대행의 구의회 동의 및 동의안(안 제8조 및 제9조)

- 수탁 및 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(안 제10조)
- 사무처리지침과 책임의 소재, 수탁 및 대행기관의 재위탁과 재대행 금지(안 제11조 ~ 제13조)
- 경비의 부담과 사용료 등 징수 및 정산, 사무편람(안 제14조 ~ 안 제17조)
- 실적보고와 지도 및 감독, 처리상황의 감사와 계약의 해제(안 제18조 ~ 안 제21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은 사무위탁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을 규정한 것임에도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의 위탁·대행은 민간위탁이나 보조금과 달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행정편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음.
- 이에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기관에 위탁·대행하는 사무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사무위탁을 방지하고 위탁·대행사업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